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7. 20 선고 2020가단172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

변 론 종 결 2021. 6. 29.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31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37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안동시 C 전 312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를 소유하고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안동시 D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‘피고 건물’이라고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. 그런데 피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7㎡를 침범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 중 위 (가) 부분 37㎡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37㎡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중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(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)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,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(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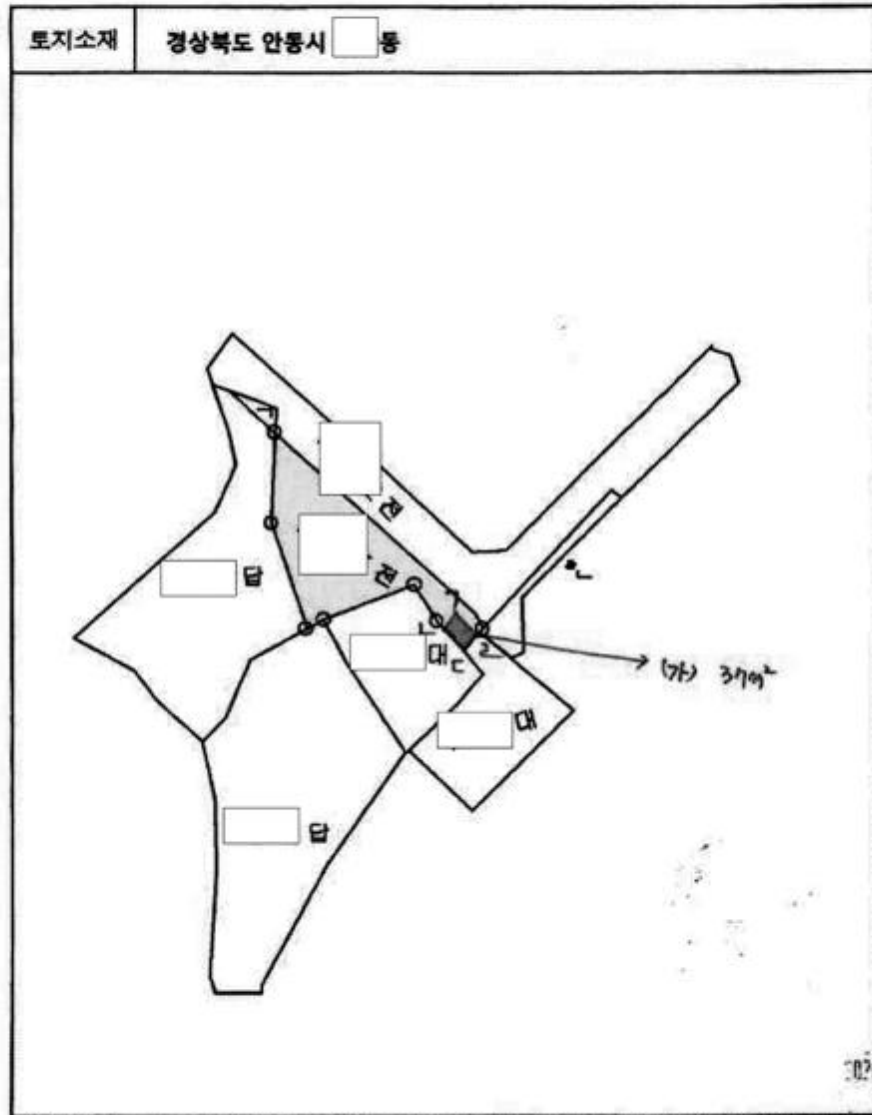
원고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피고 건물 일부분에 대한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,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광선이 2021. 4. 20. 피고로부터 피고 건물을 매수하여 2021. 4. 2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처분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, 그 외에 피고가 예외적으로 피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이정현

참 고 도 면



[유의사항] : 이 도면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